

「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플러스 일자리사업」 참여자·참여기업 모집 공고

부산상공회의소,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4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부산시 소재 조선·기자재업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「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플러스 일자리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

부산상공회의소 회장,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

I. 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신규 희망공제 사업

1.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신규 희망공제
- 지원규모 : 75명
- 지원대상 : 부산 소재 **조선·기자재업종*** 기업에 '24. 1. 1. 이후
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**정규직****으로
취업한 **부산시 거주자*****(만 18세 이상)

* 조선·기자재업종 기준 (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)
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(C311-선박 및 보트건조업) 해당 기업
 ②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%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
 → 2023년말 기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목록 확인
 ③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
**** 정규직** :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(파견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 제외)
***** 부산광역시 거주** : 신청일 7일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기준

- 지원내용 : **1년 가입시 600만원 + α(본인부담금 이자) 자산 형성**
 - (근로자 본인 부담금) 총 150만원 (12.5만원x12개월 납입)
 - (정부/부산시 지원금 적립) 총 450만원 (37.5만원x12개월 적립)
- 신청기간 : 사업공고일~2024. 12. 31. ※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
- 신청기한 :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및 선발통보 후 계좌개설
 ※ 단, 1~2월 입사자의 경우, 5/31 이내 신청 가능
- 문의처: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
 (051-990-7086, 7084, bcciplus@korcham.net)

2. 신청 자격

1) 근로자 기준

- '24. 1. 1.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(2006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)
 - 신청일 기준 **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**
 → 외국인은 제외(단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입 가능)
 *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,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전입 시 인정(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)
 - '24. 1. 1. 이후 **조선·기자재업종 기업에 정규직**으로 취업한 자
 → 단, 지원기간 중 조선사 사내협력사 간 이동 1회 허용(협력사 아닌 경우 불가)
- * 조선·기자재업종 기준 (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)
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(C311-선박 및 보트건조업) 해당 기업
 ②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%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
 → 2023년말 기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목록 확인
 ③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
**** 정규직** :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(파견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 제외)
- 소정근로시간 **주 40시간 이상인 자**
 - 근로계약서 상 **월 통상임금*이 450만원 미만인 자**
 *통상임금: 기본급과 각종수당(연장, 야간, 휴일수당, 고정 연장수당, 비정기적 상여금 등 미포함)을 포함한 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
 - 지원 제외 대상(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)
 -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*에 참여하여 지원받았거나,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
 * (정부)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청년저축계좌 (부산시) 부산기쁨두배통장사업(부기통장), 직접일자리사업 등
 → 단, 고용노동부 「**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**」의 대상자가 「**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신규 희망공제**」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및 「**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**」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가능
 - (신청일 기준)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 → 단, 휴업/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,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
 -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
 → 단, 취업 후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
 → (가입 후) 지원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 시 중도해지
 - 근로자 파견업, 인력공급업, 경비 경호업,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

- 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
-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, 형제·자매 관계가 있는 자
-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
- 기업체에 이미 근무 중인 자

이미 근무 중인 자로 보는 경우

- √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(특수고용형태종사자, 프리랜서, 노무제공자)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(3개월 이내인 자 제외)
- 다만, 아래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나, 정규직 전환 또는 취업 시점부터 지원대상이 되며,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취업 후 2개월 이내에 신규 희망 공제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
 - ① 2024.1.1.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 취업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(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는 인정)
 - ②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 의무복무 종료자가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
 - ③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 I) 수혜자
 - ④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
 -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(중소벤처기업부)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(교육부) 수혜자
 - ⑥ 국민취업지원제도의 '일경험(인턴형) 프로그램'에 참여중인 경우
<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청년 지원관련 안내 참조 9p>

-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/휴학 중인 자

재학 중이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

- √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* 후 취업한 자
 - *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,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
- √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(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) 중인 졸업예정자(수료자 포함)
 - *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
- √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*
 - * 자세한 내용은 p.11. <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안내> 참고 ** 휴학생은 지원제외

- 동일기업 또는 관련기업에서 취업 전 6개월 이내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
- 지원대상 업종(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)에서 3개월 이내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
- 근로자가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(생산직 등 현장관련 직무)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(단순 사무관리직 등)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

2) 사업장 기준

-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**조선·기자재업종** 기업

* 조선·기자재업종 기준 (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)

-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(C311-선박 및 보트건조업) 해당 기업
- ②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%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
- ③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

3 지원 내용

1) 지원규모: 75명

2) 공제금 적립내용

- 적립기간 : 공제 가입 후 **통장개설일로부터 12개월**
- 적립금액 : **1년 가입시 600만원 + a(본인부담금 이자)**
 - (근로자 본인 부담금) 총 150만원 (12.5만원x12개월 납입)
 - (정부/부산시 지원금 적립) 총 450만원 (37.5만원x12개월 적립)

3) 공제금 적립구조

○ 근로자

- 근로자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에서 적립통장으로 자동이체
→ (자유입출금 계좌) 신청 시 **부산은행 자유입출금 계좌** 개설 필수
→ (적립통장) **부산은행 "부산형 내일채움공제 적금"** 상품 가입 필수

○ 정부·부산시

- 근로자 본인 부담금 납입 확인 후, 공제금 전용 통장(수행기관)에 근로자별 매월 적립

4) 만기금 지급

- 만기일: 공제 적립통장의 만기일
- 12개월 간 근로자 본인 부담금 완납 후 지급요건 등 충족 시 만기지원금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지급

5) 휴가비 지원

○ 지원금액: 1인당 10만원 정액 지급

(취업일에 따라 상·하반기 특정 시점에 일괄 지급)

○ 지원조건

* 휴가비 지원 조건 ※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

① 워크넷을 통해 **알선취업*** 또는 **직접 입사지원****한 자

② 사업주로부터 **최소 3일 이상 휴가를 부여받은 자**(관련 증빙자료 제출)

*알선취업: 고용복지+센터, 동부산일자리센터 등 기관에서 취업프로그램 참여 후 기업에 알선취업한 자

**입사지원: 본인이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입사지원 후 지원사업장에 취업한 자 (워크넷 외 타 사이트 이용시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음)

4 신청 방법

○ 신청기간 : **사업공고일 ~ 2024. 12. 31.** ※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

○ 신청방법 : 양식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제출 후 **신청 확인**

→ 제출처 : 부산상공회의소 bcciplus@korcham.net / Tel. 051-990-7086, 7084

→ 양식 다운로드 :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매칭플랫폼(www.bcci.or.kr/job/)

알림마당 → 공지사항 →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○ 신청 및 지원 절차

신청서 제출	선발 통보	적립통장 개설	지원금 적립	만기사실 통보	만기금 지급
근로자	부산상공회의소	근로자	근로자 부산상공회의소	부산상공회의소	부산상공회의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서류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확인 심사 후 선발결과 통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산은행 자유입출금통장, 적립통장 개설 (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월 본인 납입 근로자 부담금 매월 본인 확인 후 지원금 적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사실통보 근로자 만기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출서류확인 만기금 지급

○ 신청서류

구분	신청서류
1	(신청 시 필수서류) [서식1] 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신규 희망공제 사업 참여신청서
2	(신청 시 필수서류) [서식1-1] 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신규 희망공제 사업 신청자 확인서
3	(신청 시 필수서류) [서식1-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4	[서식2] 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신규 희망공제 사업 가입신청 취소 요청서
5	[서식3] 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신규 희망공제 사업 해지 신청서
6	[서식4] 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신규 희망공제 사업 만기 지원금 지급 신청서
7	(신청 시 필수서류) 주민등록등본 (신청일 7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)
8	(신청 시 필수서류) 정규직 근로계약서 (*전환자의 경우, 기간제 근로계약서도 제출)
9	(신청 시 필수서류)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* * total.kcomwel.or.kr →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→ 보험구분: 고용 → 조회구분: 상용 → 조회 → 직종포함여부: 예 → 이력내역서 발급: 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
10	(해당자에 한함) 졸업 예정 확인서 등 최종학력 사항 입증 증빙서류
11	(해당자에 한함) 산업기능요원, 승선근무예비역,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훈련 수혜자 등 확인 서류

※ 제출서류가 불명확할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5 기타 사항

○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, 지원금 반환·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
○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○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, 참여제외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

6 관련 문의

○ 문의처: 부산상공회의소 공공사업본부 일자리사업팀
(051-990-7086, 7084, bcciplus@korcham.net)

II. 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

1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
- 지원규모 : **38명**(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)
- 지원대상 : 부산 소재 **5인 이상 조선·기자재* 기업**에 '24. 1. 1.이후 **만 35세 이상 49세 이하 부산시 거주자****를 **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, 최저임금의 120%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*****으로 채용한 기업

*** 조선·기자재업종 기준 (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)**

-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(C311-선박 및 보트건조업) 해당 기업
- ②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%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
→ 2022년말 기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목록 확인
- ③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(회원증 사본 제출)

**** 부산광역시 거주** : 신청일 7일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기준

***** 정규직** :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(파견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 제외)

- 지원내용 :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
1인당 최대 1,200만원(월 100만원x12개월) 채용장려금 지원
※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(3개월 분) 장려금 지급하며,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~2개월 단위 분할 지급
- 신청기간 : 사업공고일 ~ 2024. 8. 31. ※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
※ **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**(단, '24.1.1.부터 사업 공고일 전까지 대상자를 채용한 기업에 한하여 '24.5.31.까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)
- 문의처 : (사)부산경영자총협회 일자리지원팀
(051-328-9385/ 9384, plus@bsef.kr)

2 신청 자격

1) 사업장 기준

- 부산광역시 소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**조선·기자재업종*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****

*** 조선·기자재업종 기준 (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)**

-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(C311-선박 및 보트건조업) 해당 기업
- ②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%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
→ 2022년말 기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목록 확인
- ③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(회원증 사본 제출)

**** 우선지원 대상기업** :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

- '24. 8. 31. 까지 사업 참여신청 및 정규직 근로자 채용 완료한 기업
※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○ 지원 제외 사유 (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)

-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
-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, 밀접한 관련성*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
→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함

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

-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·분할된 경우에는 인수·합병·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
- ② 이직 전 사업과 자본·자금·인사·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
- ③ 이직 전 사업의 시설·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

※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, 기업이 고의적·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2) 근로자 기준

- '24. 1. 1. 기준 만 35세 이상~49세 이하인 자
→ 1975. 1. 1. ~ 1988. 12. 31. 출생자
-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→ 외국인은 제외(단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입 가능)
-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

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

- ✓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
* 단,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→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
- ✓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, 노무제공자)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(3개월 이내인자 제외)
- ✓ 「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- 다만,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- 기업은 채용한 대상자가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**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**
* 국세청 홈택스(<https://hometax.go.kr>)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
↳ 홈택스 누리집 > 민원증명 > 사실증명신청 >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

-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(기간의 정함이 없는)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이 350만원 미만이며,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의 120% 이상을 받는 자

*통상임금: 기본급과 각종수당(연장, 야간, 휴일수당, 고정 연장수당, 비정기적 상여금 등 미포함)을 포함한 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
→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(파견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 제외)
→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지원 제외 사유 (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)
-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
→ 다만, 2024.1.1. 이후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(정규직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후 선정되어야 함)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
-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의 120% 미만을 지급방기로 한 근로자
→ 표준 근로계약서상 통상 시급(11,832원), 통상 일급(8시간 기준 94,656원), 통상 월급(주 40시간 기준 : 2,472,888원)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
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-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
-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, 형제·자매 관계가 있는 자
-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,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
-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/휴학 중인 자

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

- ✓ **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* 후 취업한 자**
*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,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
- ✓ **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(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) 중인 졸업예정자(수료자 포함)**
*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
- ✓ **방송-통신-방송통신-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***
* 자세한 내용은 p.11. <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안내> 참고 ** 휴학생은 지원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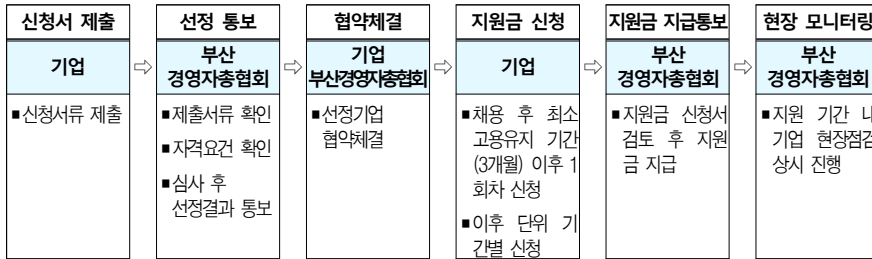
- 신규 채용 근로자가 사실상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(생산직 등 현장관련 직무)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
- 근로자 파견업, 인력공급업, 경비 경호업,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
- 동일기업 또는 관련기업에서 취업 전 6개월 이내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
- 지원대상 업종(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)에서 3개월 이내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

3 지원 내용

- 지원규모 : 38명(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)
-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
- 지원내용 :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
1인당 최대 1,200만원(월 100만원x12개월) 채용장려금 지원
※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(3개월 분) 장려금 지급하며,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~2개월 단위 분할 지급
※ 지급신청서 검토 후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이체

4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

- 신청기간 : 사업공고일 ~ 2024. 8. 31. ※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 : 양식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제출 후 **신청 확인**
 - 양식 다운로드 : 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(www.bsef.or.kr)
 - 제출처 : 부산경영자총협회 plus@bsef.kr / Tel. 051-328-9385/ 9384
- 지원절차



- 제출서류

구분	신청서류
1	[서식1] 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
2	[서식1-1] 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사업주 확인서 (기업용)
3	[서식1-2] 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결정 통지서
4	[서식2] 사업 지원 협약서
5	[서식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(사업주용)
6	[서식4] 채용계획 변경 제출서
7	[서식5] 채용자 명단 제출서
8	[서식5-1] 지원대상 요건 확인서(채용자 명단 제출 시)
9	[서식6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근로자용)
10	[서식7]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
11	[서식8] 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
12	[서식8-1] 사업주 확인서(장려금 신청 시)
13	[서식8-2] 부산형 조선·기자재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결정 통지서

- 선정방법

- 지원범위 내 신규 채용 근로자 근무 확인, 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‘선정위원회’의 최종 평가 및 조정·심의를 통해 수혜기업 선정

5 유의사항

-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, 지원금 반환·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-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6 관련문의

- 문의처: 부산경영자총협회 일자리지원팀
(051-328-9385/ 9384, plus@bsef.kr)